



주제

접촉자 대상 PCR검사 /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

()월 ()일 기준, 본교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접촉자(학생)를 귀가조치 하였습니다.
 접촉자(학생)는 학교장 확인서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,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PCR검사를 받아주시고 음성인 경우는 추가로 2회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7일간 PCR검사 1회,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(선제검사 횟수 포함)하며, 각 검사마다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합니다.

[7일간 PCR검사 1회,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방법]

<p>(1차 검사)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PCR 검사 (2차 검사) 1차 검사 후 3일차 저녁에 신속항원검사 (3차 검사) 7일차 저녁에 신속항원검사 ※ 3회 중 2회(교직원은 1회) 선제검사 키트 활용</p>	<p>예시) 3월 3일 확진 발생으로 접촉자 분류 (1차 검사) 3월 3일 귀가조치, 당일 PCR검사 → 음성, 다음날 등교 (2차 검사) 3월 5일 저녁 2차 신속항원검사 → 음성이면 다음날 등교 (3차 검사) 3월 9일 저녁 3차 신속항원검사 → 음성이면 다음날 등교</p>
--	--

▶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할 것을 권고합니다.

※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,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(재검출)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함. 다만,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가 판단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

< 검사 결과에 따른 협조사항 >

▶ 등교 시 하단의 '보호자 확인서 또는 음성 확인서(지정의료기관 발급)'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.

◇ (검사결과 음성): 등교 가능

- 1차 PCR검사 결과는 음성확인서/문자 담임교사 사진 전송

- 2차 결과는 문자나 사진 전송, 3차 결과는 최종확인서로 매 검사 결과와 보호자 서명하여 제출

◇ (검사결과 양성)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고,

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지정의료기관에서 PCR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 읍 남 초 등 학 교 장



PCR검사 /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

학년 반 이름:

	1차 PCR검사	2차 신속항원검사	3차 신속항원검사	비고
검사일				(예시) 3.14
검사결과				(예시) 음성

※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1차 PCR검사, 이후에는 2회의 신속항원검사 실시

보호자

(서명)